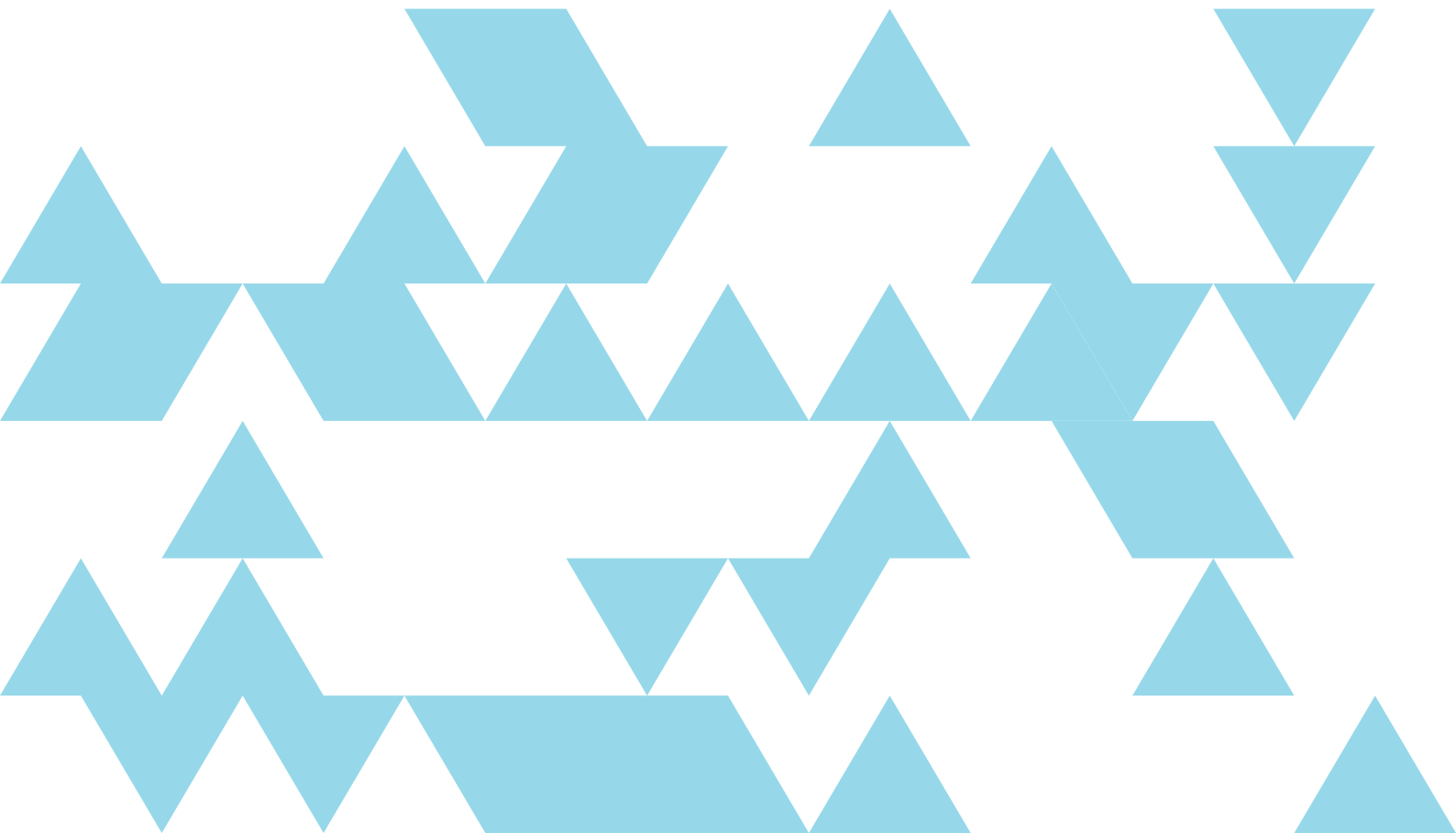


#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

(지상파 TV, 라디오, 유료 TV)

방송사와 BSA가 여타 이해 당사자 및 대중과 협의하여 마련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요강이 이전의 BSA 자료(예: 준칙, 실무 지시, 권고 의견)와 상충되면 이 요강이 우선합니다.



# 차례

---

<b>머리말</b>	<b>2</b>
------------	----------

---

<b>파트 1</b>	<b>5</b>
-------------	----------

기준 1 - 불쾌하고 불편한 콘텐츠	6
기준 2 - 어린이의 이익	10
기준 3 - 불법 또는 반사회적 행위의 조장	11
기준 4 - 차별 및 폄하	12

---

<b>파트 2</b>	<b>14</b>
-------------	-----------

기준 5 - 균형	15
기준 6 - 정확성	16

---

<b>파트 3</b>	<b>18</b>
-------------	-----------

기준 7 - 사생활 보호	19
기준 8 - 공정성	20

---

<b>BSA 민원 처리 절차</b>	<b>22</b>
---------------------	-----------

---

# 머리말



# 머리말

## 방송 요강집을 개정해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는 과거에 의해 제약받습니다.

이 요강은 지난 33년 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방송법 1989를 모태로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이 요강의 운용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인터넷 기술 덕분에 통신 모드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고,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 큰 혜택이 돌아갔지만 거짓 정보와 낱조 정보, 유해 매체물의 확산과 양극화에 있어 이러한 변화가 하는 역할, 그리고 방송과 같은 미디어 부문의 '전통적인' 요소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논의와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사회(뉴질랜드에서 16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됨)여서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지만 차별이나 편차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방송사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법규를 해석하는 환경이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콘텐츠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대적 맥락을 반영하고 시청취자가 이해하기 쉬운 심의 요강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견실한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뉴질랜드 권리장전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의 요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와이탕이 조약에 담긴 파트너십, 보호 및 참여의 원칙을 인정하고 탕아타훼누아(마오리 주권)의 필요 사항, 열망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조약이 보장하는 중요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탕아타훼누아, 방송사 및 시청취자와의 협력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압니다.

다음의 요강과 지침은 축약하고 고쳐 썼지만 1989년 이후 우리가 얻은 교훈에 충실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가 변화했고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도 반영했습니다.

## 배경

방송법 1989(이하 '법')는 방송 기준의 시스템을 정합니다. 이 요강은 모든 방송사(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유료 텔레비전 포함)와 시청취자에게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요강이 도입될 때까지는 각 플랫폼마다 별도의 요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아직 서로 중요한 차이점이 남아 있으며 적절한 경우, 이 차이점이 인정되고 반영됩니다. 선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사람들은 기준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면 방송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방송심의위원회(BSA)에 민원을 제기해 독립적인 판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심의위원회

BSA는 과도한 절차 없이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자연적 정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사회의 풍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합한 경우 외부의 문화적 자문과 독립적인 통번역을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히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BSA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및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같은 뉴질랜드의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홍보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뉴질랜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권리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정보/아이디어의 교환을 위해서도 방송사 콘텐츠의 중요한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방송사는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편, 문화를 반영하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양물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가르치고 오락물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규제 민원 시스템은 이 점을 인식합니다. 법과 상식에 의거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권리장전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명백히 정당화될 때'만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공익 수준도 특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방송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방송사

방송 기준은 크고 작은 모든 뉴질랜드 TV 및 라디오 방송사에 적용됩니다. 각 방송 플랫폼은 시청취자의 다양한 언어, 문화 및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마오리 말과 마오리 세계관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특별한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우리의 방송 환경에 반영됩니다.

## 선택과 통제

사람들이 TV나 라디오에서 자신과 미성년 자녀가 접하는 것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한 시청이나 청취에 대한 책임을 시청취자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사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시청취자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 TV의 자녀 보호 잠금(Parental lock), 영상 등급, 시청자 권고 정보, 방송 시간대 및 라디오의 적절한 편성 및 청취자 권고 정보 등입니다.

시청취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과 통제 수준은 무엇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방송사가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유료 TV는 고객이 방송 수신료를 지불함에 있어 선택을 한다는 점 때문에 운용 환경이 덜 제한적입니다.

## 기준, 지침 및 해설

다음 페이지부터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적용되는 여덟 가지 기준과 각 기준별 지침을 제시하고, 해설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침과 해설은 그저 지침과 해설일 뿐입니다. 확고한 규칙이 아니며 기준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각 기준의 문구와 목적은 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 전면이 부각됩니다.

지침과 해설은 각 기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려줍니다. 콘텐츠가 방송된 플랫폼을 포함하여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파트 1

# 사회적 책임



## 기준 1 - 불쾌하고 불편한 콘텐츠

방송 콘텐츠는 취향과 품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다음 사항을 감안해 시청취자에게 과도한 불쾌감이나 불편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프로그램 맥락 및 포괄적 방송 맥락
- 시청취자가 자신과 자녀의 시청이나 청취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방송사가 제공한 정보

### 지침

#### 일반

- 1.1 이 기준은 성적 소재, 알몸 노출, 폭력, 거친 언사가 들었거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타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규제합니다.
- 이러한 콘텐츠가 나오는 상황과 포괄적 방송 맥락은 방송의 기준 위반 여부를 판정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관심<sup>1</sup>
- 방송의 성격
- 방송 등급(관련될 경우)
- 방송 시간(라디오 및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 시청취자 권고 정보/경고
- 표적 및 잠재 시청취자
- 프로그램 및 채널/방송국에 대한 시청취자의 기대
- 홍보를 포함한 콘텐츠에 관해 시청취자에게 주어지는 기타 정보

-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편집 통제력 수준(방송이 생방송인지 사전 녹화되었는지, 패스스루 채널을 통해 수신되었는지 여부 등)
- 불쾌감을 줄 잠재력이 있는 매체물이 예기치 않거나 부주의하게(예: 제3자에 의해) 방송됨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한 조치
- 사용 가능한 여타 보호 장치(예: 필터링 기술)<sup>2</sup>

#### 1.2 라디오 프로그램:

- 토크백 방송은 주장이 강하게 표출되는 환경으로, 열띤 토론을 위해 도발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허용됩니다.
- 심각하게 불쾌한 내용이 제3자에 의해 실수로 방송되는 경우, 진행자가 즉시 문제를 시정하면 기준 위반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 시청취자의 선택과 통제

- 1.3 방송사가 시청취자에게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과 자녀의 시청 또는 청취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분류 등급

- 1.4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정확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뉴스와 시사물, 스포츠, 라이브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다음의 분류 등급을 방송해야 합니다.

**G – General: Approved for general viewing:**  
**G – Arowhānui: Kua whakaaetia mō te mātakitaki a te katoa:**

**G - 일반:** 전체 시청자: 어린이에게 부적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반드시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sup>1</sup> 공적 관심은 상당수 뉴질랜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문제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의 흥미거리 이상의 것입니다.

<sup>2</sup> 필터링 기술은 시청자가 특정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게 텔레비전 또는 셋톱 박스를 통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녀 보호 잠금, 보호자 통제(Parental control), PIN 코드, 등급 잠금 또는 콘텐츠 필터라고도 합니다.



**PG – Parental Guidance: Parental Guidance recommended for younger viewers:**

**PG – Tohutohu ā-Matua: E tūtohua te Tohutohu ā-Matua mō ngā kaimātakitaki tamariki ake:**

**PG - 부모 지도:** 어린 시청자에게 부모 지도 권장: 성인 시청자에게 더 적합하지만 부모나 성인의 지도가 있으면 어린이 시청자에게 반드시 부적합하지는 않은 프로그램

**M – Mature Audiences: Suitable for mature audiences 16 years and over:**

**M – Ngā Kaimātakitaki Pakeke: E tika ana mā ngā kaimātakitaki pakeke 16 tau, pakeke atu:**

**M - 성인 시청자:** 16세 이상의 성인 시청자에게 적합: 프로그램에 폭력, 성적 내용, 불쾌한 말, 성인 테마, 나체 또는 일부 어린이와 부모를 언짢게 할 기타 콘텐츠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칠 영향이 보통 정도인 콘텐츠와 성숙한 관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 – People under 16 years should not view:**

**16 – Kaua e matakina e te hunga i raro i te 16 tau:**

**16 - 16세 미만 시청 불가:** M 등급을 초과하는 강한 내용이나 특수 요소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 더 높은 수준의 성적 내용과 불쾌한 말, 사실적인 폭력 및 강한 성적 테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8 – People under 18 years should not view:**

**18 – Kaua e matakina e te hunga i raro i te 18 tau:**

**18 - 18세 미만 시청 불가:** 일부 성인 시청자도 언짢거나 불쾌할 수 있는 테마가 포함된 프로그램

1.5 뉴스, 시사물, 스포츠 및 라이브 콘텐츠는 특성상 등급 분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가 시청/청취할 때는 보호자가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어린이의 이익과 기타 방송 기준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지점에 시청취자 권고 정보를 넣음으로써 시청취자가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분류 등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청취자 권고 정보(경고 포함)**

1.7 시청취자의 기대를 벗어나거나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거나 상당수 시청취자에게 불쾌감이나 기분 손상을 초래할 것 같은 콘텐츠를 내보내기 전에는 적절한 권고 정보를 방송해야 합니다.

1.8 각 경우에 어떤 것이 적절할지는 방송 플랫폼, 콘텐츠 성격 및 방송사의 편집 통제력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시청취자 권고 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음성으로만(라디오에서)
- 다음 권고 기호 중 하나 이상(텔레비전 프로그램용):

**C – content may offend**

**C – ka mōrihariha pea ngā ihirangi**

**C - 내용이 불쾌할 수 있음**

**L – language may offend**

**L – ka mōrihariha pea te reo**

**L - 언어가 불쾌할 수 있음**

**V – contains violence**

**V – he whakarekereke kei roto**

**V - 폭력적 장면이 있음**

**S – sexual content may offend**

**S – ka mōrihariha pea ngā ihirangi hōkaka**

**S - 성적 내용이 불쾌할 수 있음**

- 화면상에 자막(또는 자막과 음성)으로 나가는 별도의 시청취자 권고 정보(수위가 높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것 같은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가 강간, 성폭력, 자살과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라면 방송사는 상담전화 안내 정보도 넣을 수 있습니다.

1.9 권고 정보는 시청취자가 자신과 자녀의 콘텐츠 노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이되 과도하게 기분을 어지럽히거나 불쾌감을 줄 만큼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지상파 텔레비전의 영상 등급 및 시청자 권고 정보 표시

- 1.10 분류 등급 및 시청자 권고 정보 기호(C, L, V, S)를 표시해 시청자가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표시해야 하는 지점:
- G 또는 PG 등급 프로그램의 도입부
  - M, 16 또는 18 등급의 콘텐츠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와 중간 광고(지상파 TV)가 끝날 때마다
- 1.11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이나 인쇄물 형태의 프로그램 편성표에 분류 등급과 시청자 권고 정보/권고 기호(있는 경우), 프로그램 설명을 넣어야 합니다.
- 1.12 유료 TV의 경우, 편집 개입권이 없거나 매우 제한된 외국 패스스루 채널에 대해 시청자 권고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책임감 있는 스케줄 편성

- 1.13 방송사는 잠재/표적 시청자, 어린이의 이익, 시청자의 선택 및 통제 능력과 모든 적용 기준을 신중히 고려해 책임감 있게 스케줄을 편성해야 합니다.
- 1.14 유료 TV의 경우, 특히 필터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책임감 있는 편성이란 대체로 프로그램 방영 시간대보다는 채널 프로그램이 해당 채널의 표적 시청자나 장르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패스스루 채널에서는 방송사가 프로그램 스케줄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 1.15 효과적인 필터링 기술을 시청자가 이용할 수 있고 방송사가 정기적으로 이 필터링 기술을 홍보하는 경우,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케줄 편성에 대한 민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 1.16 지상파 프로그램:
- G 및 PG 등급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대에 제한이 없습니다.

- M 등급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지정한 방학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 오전 5시에 방송할 수 있습니다.
- 16 등급 프로그램은 오후 8시 30분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할 수 있습니다.
- 18 등급 프로그램은 오후 9시 30분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는 G 또는 PG 등급 프로그램에서 M, 16 또는 18 등급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동안에 포함하여 M, 16 및 18 등급 콘텐츠의 스케줄을 편성할 때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 방송사는 일반적인 어린이 시청 시간대(지침 2.1 참조) 및 구체적으로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의 성인 프로그램(M, 16, 18 등급) 홍보 스케줄을 편성할 때 어린이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홍보 주제와 내용이 프로그램 등급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 1.17 유료/가입 채널 프로그램:

- G, PG, M, 16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다른 방송 기준을 준수하는 한 언제든지 방영할 수 있습니다.
- 18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다른 방송 기준을 준수하는 한 프리미엄 채널에서<sup>3</sup> 언제든지 방영할 수 있습니다.
- 18 등급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필터링 기술이 시청자에게 무료 제공되면서 방송사가 이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해당되는 다른 방송 기준을 준수하는 한 다른 채널에서 언제든지 방영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필터링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면 18 등급 프로그램은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 사이, 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만 방영할 수 있습니다(주말, 방학, 공휴일은 오후 8시 30분에서 오전 5시 사이만 가능).
- 18 등급으로 분류된 노골적인 성인 섹스물은 프리미엄 채널에서만 방영할 수 있습니다.

<sup>3</sup> 프리미엄 채널은 유료/가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미 지불한 베이스 레벨의 기본 요금에 더해 가입자가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기로 한 유료 텔레비전 채널을 의미합니다.

## 해설

### 일반

이 기준의 목적은 과도한 불편감이나 혐오감을 널리 유발하거나,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시청취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서로 크게 다르며 뉴질랜드의 다양한 사회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과 품위 문제를 고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달리 민감한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방송 가능 내용이 결정되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사회 규범에 심각하게 반하거나 시청취자에게 과도한 불편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 맥락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짢은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맥락에 따라 이것이 정당화되거나 유해성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타이밍은 시간대가 정해진 지상파 TV에서는 관련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료 TV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료 TV는 고객이 방송 수신료를 지불함에 있어 선택을 한다는 점 때문에 운용 환경이 덜 제한적입니다. 늦은 밤에나 뉴스 프로그램에서, 또는 극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방송되는 불편한 내용은 용인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도전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폭력이 TV에 시각적으로 묘사될 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실관계와 맥락에 따라 각각의 사안이 결정됩니다.

### 선택과 통제

시청취자가 무엇을 보거나 들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시청/청취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용인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폭력물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불편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기타 매체물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종류의 일부 매체물이 방송되는 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하거나

보거나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여하에 따라 방송사는 권고 정보/경고, 적절한 스케줄 편성, 방송 시간대, 등급 분류, 전자 프로그램 편성표, 필터링 기술(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음)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필터링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 경우, 이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감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청취자의 기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의 도구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기대 외에도 일부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예: 라디오 방송국)는 표적 시청취자를 정해 두고 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정당하게 선택하고 편성했습니다. 토크백 라디오는 열띠고, 때로는 도전적인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범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정보 - 플랫폼 유형에 따른 차이

이 기준의 어떤 측면은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주된 차이점은 분류 등급 및 방송 시간대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상파 TV는 명확하게 정해진 분류 등급과 그 각각의 방송 시간대가 있습니다(G, PG, M, 16, 18). 라디오는 정해진 방송 시간대가 없지만 아이들이 하루 중 특정 시간(예: 방과 후, 평일 오후 8시 30분까지, 주말)에 방송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료 TV는 지상파 TV와 동일한 분류 등급 및 시청자 권고 정보를 적용하지만 방송 시간대에 제약이 없습니다.

## 기준 2 - 어린이의 이익

방송사는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sup>4</sup>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침

#### 일반

- 2.1 방송사는 오후 8시 30분까지의 통상적인 어린이 시청/청취 시간대(특히 방과 전후)와 주말 및 공휴일에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간 시간은 어린이의 시청/청취 시간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2.2 이 기준에 따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성적 내용이나 주제
  - 폭력적 콘텐츠나 주제
  - 저속한 언어
  - 사회 갈등이나 가정 불화
  - 위험하거나 반사회적 또는 불법적 행위
  - 어린이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가혹하게 다루는 내용
  - 극심한 고통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
 이것들은 프로그램 유형이나 프로그램 등급으로부터 시청취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벗어납니다.
- 2.3 맥락은 이 기준에 따른 민원을 판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등급 및 시청취자 권고 정보, 방송 시간대, 표적 및 잠재 시청취자, 시청취자 기대치, 필터링 기술의 제공 여부, 방송사가 필터링 기술의 사용을 장려했는지

여부, 방송에 대한 공적 관심, 어린이에게 미칠 유해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유머나 교육적 효과 따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상파 TV와 유료 TV

- 2.4 필터링 기술과 같은 안전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제공한다면 정기적으로 명확히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2.5 M 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콘텐츠, 특히 성적 또는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동일한 채널에서 어린이용 콘텐츠에 인접해 방송해서는 안됩니다.
- 2.6 가정 불화나 어린이 학대와 같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를 다루는 허구적 콘텐츠의 주제와 장면은 적절하게 등급을 분류해 편성해야 합니다. 유료 TV의 어린이 채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피해야 합니다.
- 2.7 어린이가 볼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사실적인 폭력 묘사 장면이 있으면 주의 깊게 스케줄을 편성하고 등급 분류를 해야 합니다.
- 2.8 통상적인 어린이 시청 시간대(지침 2.1 참조)에 지상파 TV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시청자 기대 수준을 벗어나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자막(또는 자막과 음성)으로 시청자 권고 정보를 방송해야 합니다. 권고 정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콘텐츠 노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구체적이되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만큼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2.9 지상파 TV에서 방송하는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프로그램에서 불편하거나 충격적인 내용은 공적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방송사는 뉴스 프로그램에 들어갈 그래픽 자료의 수위를 결정할 때 판단력과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특히 어린이가 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청자 권고 정보를 방송해야 합니다.

4 '어린이'는 14세 미만입니다.

## 유료 TV

- 2.10 유료 TV의 콘텐츠는 어린이 시청용이 아닌 경우, 어린이에게 특별히 홍보해서는 안 되며 기준 1에 따라 방영해야 합니다.
- 2.11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TV 채널은 어린이에게 적합한 콘텐츠만 다루어야 합니다.

## 라디오

- 2.12 이 기준은 어린이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보통 어린이의 통상적인 청취 시간 - 지침 2.1 참조) 동안에만 라디오에 적용됩니다.

### 해설

이 기준의 목적은 부모와 보호자가 과도하게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거나 유해하거나, 또는 신체·정신·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매체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방송 시청이나 청취에 대해 다룹니다. 방송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어린이에 대한 공정성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것은 그러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플랫폼 여하에 따라 어린이의 이익은 권고 정보/경고, 적절한 스케줄 편성, 방송 시간대, 등급 분류, 필터링 기술(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음)을 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잠재적으로 부적합한 모든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은 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목표는 방송사가 폭넓은 시청취자층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료 TV의 맥락에서는 방송사가 시청취자에게 정보와 필터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특별 채널에 가입하는 틈새 고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보호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을 공유하므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도구를 이러한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거나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그 밖의 접근 통제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이것을 알리고 사용 방법도 홍보해야 합니다.

어린이 이익 기준은 '불쾌하고 불편한 콘텐츠' 기준과 동일한 맥락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됩니다. 하지만 중점을 두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의 중점 사항은 어린이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입니다. 어린이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콘텐츠라도 시청취자층 전체를 고려할 때는 유해하거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기준 3 - 불법 또는 반사회적 행위의 조장

방송 콘텐츠는 맥락과 시청취자의 선택 및 통제 능력을 고려하여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할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 지침

- 3.1 맥락은 프로그램의 잠재적 실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은지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맥락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지침 1.1 참조)
  -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콘텐츠에서 공적 관심 측면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특히 어린이가 보거나 들을 것 같을 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수준의 생생한 세부 묘사가 들어 있는지 여부
  - 적절한 지점에 시청취자 권고 정보와 권고 기호,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전화 안내 정보를 넣었는지 여부(지침 1.7~1.9 참조)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신중하게 등급 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지침 1.4 참조)
  - 책임감 있게 스케줄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지침 1.13~1.17 참조)
  - 사실적 작품인지, 허구적/극적인 작품인지 여부(허구/극적인 작품은 창조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기준 위반 가능성이 낮음)
- 3.2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의 편집 통제력 수준은 이 기준에 따른 민원을 심의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는 외국 패스스루 채널에서 방영되는 콘텐츠에 대해 편집 통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합니다.

### 술 홍보

3.3 방송사는 술 홍보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관련된 광고심의위원회 요강 포함)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방송 프로그램 장면에 적합한 술 홍보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3.4 술 홍보는 다음 중 하나나 그 이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술 제품, 브랜드 또는 판매점의 프로모션(‘프로모션’)
- 프로그램의 술 후원(‘후원’)
- 술 소비 옹호(‘옹호’)

3.5 방송에서의 모든 술 홍보는 다음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술 구입이 금지되는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구입하도록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 방송의 지배적 내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과도한 술 소비를 옹호하고 이를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후원의 경우에는 브랜드, 제품명 또는 로고에 국한하고 판매 메시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 술 후원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후원은 부차적이어야 합니다.
- 위의 지침이 적절하게 고려되는 한, 그러한 홍보가 해당 이벤트나 상황의 정상적인 특징이라면 이벤트나 상황의 방송에서 제외될 필요는 없습니다.

## 해설

### 일반

이 기준의 목적은 법을 어기도록 시청취자를 부추기거나 범죄 또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방송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불법 행위

이 기준은 방송사가 명시적으로 규탄하지 않고서 범죄 행위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의나 묘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순수한 의도로 법을 비판하거나 법원/경찰의 법 집행을 비판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적극적으로 법이나 법적 절차를 훼손하거나 그에 대한 불복종을 조장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도록 직접 선동하는 것은 시청취자가 이에 따라 행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것을 긍정적이거나 익살스럽다고 표현하는 방송은 이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범죄 방법에 대한 명시적 설명 또한 법과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행위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는 상당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이나 사회 관습에 위배됩니다(예: 성폭력, 자살, 약물 남용).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보다 범위가 넓으며 기타 반사회적 활동(예: 방송에서 실제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4 - 차별 및 편하

방송 콘텐츠는 성별, 성적 취향, 인종, 연령, 장애나 직업을 이유로, 또는 종교, 문화, 정치적 신념을 정당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사회의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편하를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 지침

- 4.1 '차별'은 공동체의 특정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다른 대우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편하'는 공동체의 특정 계층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 4.2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방송이 기준을 위반해 차별이나 편하를 부추겼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악의나 앙심의 요소가 내포된 높은 수준의 비난이 있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강화하거나 주입하는 효과를 주는 방송 콘텐츠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사실 기반
    - 순수한 의도로 표현한 진지한 발언, 분석, 의견
    - 정상적인 유머, 드라마, 풍자
- 4.3 맥락은 방송이 너무 심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맥락 정의는 지침 1.1 참조). 다음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쓰인 말
  - 발언자의 어조
  - 발언이 나온 자리(예: 진지한 정치적 토론이나 풍자)
  - 발언이 반복되었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거나, 아니면 정정 또는 반박되었는지 여부
  - 발언이 폭넓은 토론으로 발전하는 데 유효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성이 있었는지 여부

발언이 단순히 특정 그룹에 비판적이라거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하다고 해서 기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지한 논평, 사실 기반 프로그램, 정상적인 드라마, 유머 및 풍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해를 끼칠 잠재력이 없는 한, 어디까지나 가치 있는 표현 형식이며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차별 및 편하 기준은 진화하는 사회적 기준과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1990 제6조와의 관련 하에 해석됩니다(권리장전에 담긴 권리 및 자유와 일치하는 해석이 선호됨).

## 해설

이 기준의 목적은 언어 공격이나 기타 공격으로부터 특정 계층을 보호하고 평등 정신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공정성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이나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트 2

#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콘텐츠에서 균형과 정확성을 갖춘 보도



## 기준 5 - 균형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적 문제가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프로그램에서 논의될 때 방송사는 시청취자가 다른 미디어로부터 의미 있는 관점을 접해서 알고 있으리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한, 동일한 방송에서나 현재 관심 기간 내의 다른 방송에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합당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지침

5.1 이 기준에 따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두 단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첫 단계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거나 이들이 우려할 만한 일)
  - ‘논쟁적’ 문제(화제성 이슈; 의견 충돌을 초래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문제 - 예를 들면 뉴질랜드 정치 정책, 공중보건 및 안전, 공공지출과 관련된 문제)
  -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프로그램(예: 탐사 보도나 심층 취재 - 간단한 뉴스 보도, 특정 관점에 명확히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인 또는 인간의 관심사 이야기는 논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에서 ‘토론된’ 문제
- 두 번째 단계는 방송사가 그 상황에서 의미 있는 관점을 충분히 제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5.2 이 기준은 현재의 관심도가 지속되는 기간 중에 점차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중요한 특정 논쟁거리를 토론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모든 관점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5.3 이 기준은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거리에 대한 각각의 의미 있는 관점에 동일한 양의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송사는 문제의 성격과 이 문제의 방송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의미 있는 대안적 관점을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5.4 다음과 같은 경우,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경감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도입부로 판단했을 때나 프로그램 진행 방식으로 보았을 때 다음 사실이 분명할 경우:
  - 프로그램이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라고 주장하거나 의도하지 않음
  - 프로그램이 특정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냄
  - 프로그램이 보다 크고 복잡한 논쟁의 한 측면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문제가 짙막하거나 익살스럽거나 부차적인 방식으로만 제기될 경우.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기보다는 사건이나 진행 상황을 단순히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와 반대로, 그 이슈가 중대한 탐사 심층 보도의 초점이 되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니다.
- 시청취자가 다른 방송사나 미디어 매체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표현된 관점을 접해 알고 있으리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경우
- 맥락상 시청취자가 대안적 관점이 제시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경우
- 방송사가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편집 통제권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경우(예: 외국 패스스루 유료 TV 채널에서 방송하는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프로그램)

5.5 방송사의 편집 통제권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외국 패스스루 유료 TV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균형성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제공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유료 TV 고객이 특정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이 기준의 목적은 시청취자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 의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현실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과 지침에는 뉴질랜드의 현재 방송 환경, 그리고 여러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주제에 관한 증가된 정보 흐름이 반영됩니다. 오늘날의 시청취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준에 따른 민원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다른 시점에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여타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떤 문제(예: 기후 변화, 백신 안전성)에 대해 대안적인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의 목적상 '논쟁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뉴스나 시사물, 사실 기반 프로그램이 중립적으로나 치우침 없이 제시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설정된 한도 내에서 방송사는 특정 아이디어나 철학, 인물(예: 정치인)을 자유롭게 알리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주된 고려 사항은 시청취자가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송사가 의미 있는 시각을 누락하거나 잘못 취급함으로써(예: 의미 있는 시각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거나 그 타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시) 시청취자가 잘못 알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기준 6 - 정확성

방송사는 뉴스, 시사물 및 사실 기반 콘텐츠를 방송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모든 중요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정확성

- 시청취자를 크게 오도하지 않음(사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나 인상을 가지게 않게 함)

사실상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지침

- 6.1 사실 정확성에 대한 의무는 사실 진술이라기보다는 분석, 논평 또는 의견이라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는 분석, 논평 또는 의견이 다음의 여하한 사실과 관련해 시청취자를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언급되는 사실, 또는
  - 분석, 논평,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
- 6.2 이 기준은 내용 전체에 대한 시청취자의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기술적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3 방송사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는 관련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방송된 내용의 출처(예: 유명기관이나 권위있는 전문가; 또는 유명하지 않거나 권위가 없는 기관/인물의 소셜 미디어 또는 서드파티 콘텐츠로서, 방송사가 추가적인 주의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는 것)
  - 방송이 생방송인지 사전 녹화되었는지 여부
  -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방송사가 관련 인물이나 조직으로부터 논평, 설명 또는 의견을 구하거나 제시했는지 여부
  - 정확성 문제를 방송사가 상당한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 후속 방송의 영향(예: 정보가 진행 중인 사건의 일부로서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된 경우; 또는

방송 시간과 콘텐츠 액세스 시점 사이에 지연이 있는 경우)

-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의 편집 통제권 수준

6.4 토크백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정확성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한 경우
- 진행자의 분석, 논평 또는 의견이 지침 6.1에 설명된 방식으로 청취자를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경우

6.5 방송사의 편집 통제권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외국 패스스루 유료 TV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정확성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제공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유료 TV 고객이 특정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6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사는 다음을 고려하여 합당한 방식으로(예: 방송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오류의 성격과 영향
- 관련 주제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질 수 있게 될지 여부
- 시청취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릴 가능성에 미치는 다른 미디어 방송의 영향
- 오류가 발견된 시점(그리고 시간 경과가 뉴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

## 해설

이 기준의 목적은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사회에 퍼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거짓 정보와 날조 정보로부터 뉴질랜드를 보호하는 데 방송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프로그램과 의견, 인터뷰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편집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와 관련해 대중을 오도하지 않도록 항상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직접 진술되든, 아니면 사실이 의견의 토대를 이루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뉴스, 시사물, 사실 기반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 뉴스와 시사물은 논의 주제가 무엇이고, 시청취자가 보통 무엇을 뉴스와 시사물이라고 여길 것인지를 고려해 대체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의견과 분석(예: 정치부장 및 기타 전문가의)이 들어가도 되고, 또 들어가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실 기반 프로그램은 신뢰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다큐멘터리 등 권위있거나 진실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논픽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의 진술인지, 아니면 분석이나 논평, 의견인지를 평가할 때(지침 6.1) 다음의 요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쓰인 말
- 프로그램 유형(예: 토크백은 사실적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에 치중하는 환경으로 인식됨)
- 화자의 역할이나 명성
- 주제
-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진술이었는지 여부
- 증거나 증빙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여부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사가 이를테면 권위있는 출처에 의존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침 6.3).

## 파트 3

# 사생활 보호 및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기준 7 - 사생활 보호

방송사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일치하는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침

#### 신원 식별

- 7.1 사생활 보호 기준은 신원 식별이 가능한 현재 살아 있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7.2 개인의 신원 식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의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방송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알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이외의 사람도 그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방송에 나온 정보와 쉽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타 자료를 조합하면 이 기준의 목적상 신원 식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퍼즐 식별’).
  - 이름을 밝히거나 표시되지 않더라도, 또는 신분을 부분적으로 가리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적 정보나 자료의 공개

- 7.3 방송사는 개인의 사적 정보나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그 개인의 입장이라면 매우 불쾌해 할 방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수준

- 7.4 공개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요소로는 다음의 것이 해당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 콘텐츠가 공적 영역에 있는 것인지 여부
  - 콘텐츠가 내밀하거나 민감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성격의 것인지 여부

-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의 유형, 즉:
  - 공적 인물,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대중 노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공적 역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낮습니다.
  - 합리적으로 볼 때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 7.5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치가 없지만 그러한 문제의 공적 성격은 확고부동하지 않습니다.
- 7.6 공공 장소(즉, 대중이 보통 접근할 수 있는 곳이나 대중에게 보이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치가 없지만 그 상황에서 개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러한 기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람은 취약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
  - 사고 피해자
  - 개인적인 비극이나 사별을 겪는 사람
- 7.7 방송사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얻은 콘텐츠를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 매우 불쾌한 공개

- 7.8 사적 정보의 공개가 매우 불쾌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요소로는 다음의 것이 해당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 콘텐츠가 특히 당혹스럽거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
  - 특히 취약한 개인인지 여부
  - 상황의 심각성(예: 정보가 수집된 수단의 문제성, 방송이 착취적이거나 불필요했는지 여부)
  -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또는 방송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괴롭힘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항변

7.9 정당한 공적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항변입니다. 정당한 공적 관심사는 상당수 뉴질랜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문제입니다(다시 말해, 단순한 대중의 흥미거리 이상의 것). 항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공적 관심의 정도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 공적 관심이 사생활 침해가 의심되는 특정 정보나 녹음의 공개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7.10 당사자가 사생활 공개나 침범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승낙을 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정보에 입각한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 방송에 응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 응하는 내용의 진정한 맥락과 목적을 이해할 때
- 동의의 성격과 기간을 이해할 때
- 방송에 응하기로 자유로이 동의할 때

7.11 부모나 보호자 또는 18세 이상의 후견인(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16세 미만 어린이를 대신해 승낙할 수 있지만 방송사는 방송이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해설

사생활 보호 기준의 목표는 자신이나 자신의 일이 대중 방송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 자율성, 정신건강과 평판을 보호하고,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와 의견,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이들의 능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방송사가 자료 수집과 녹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시간과 문화, 기술에 따라 달라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침은 완전하지 않으며 민원에 적용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거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뉴질랜드 국내외의 개인정보보호법 변화 동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기준 8 - 공정성

방송사는 방송에 출연하거나 방송에서 언급되는 개인 또는 조직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 지침

8.1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고려하고 개인/조직에 대한 불공정성을 찾기 위한 임계치를 정할 때 다음 요소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성격(예: 뉴스 및 시사물, 정치 콘텐츠, 사실 기반, 극적, 코미디 또는 풍자)
- 콘텐츠 출처(예: 콘텐츠가 국내에서 방송사에 의해 직접 제작되었거나 방송사의 의뢰로 제작되었는지, 혹은 해외에서 공급되었는지 여부)
- 개인/조직의 성격(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임계치는 미디어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일반인과 달리 미디어를 상대하는 일에 익숙한 공인이나 정치인, 조직이 더 높음; 개인/조직이 뉴질랜드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이 개인/조직에 대해 시청취자에게 부당하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는지 여부
- 비판적인 의견이 개인/조직의 사업이나 경력 또는 개인적 삶을 겨냥했는지 여부
-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방송의 공적 의미와 그 가치
- 표적 및 잠재 시청취자, 시청취자 기대

- 프로그램이 생방송인지 사전 녹화되었는지 여부
  - 개인의 취약성
- 8.2 출연자와 기여자는 공익 차원에서 정당화되거나 프로그램 맥락상 참여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방송 전에 프로그램 성격과 자신이 기여할 사항에 대해 들어 알아야 합니다.
  - 8.3 사전 승낙이 필요했는지, 또는 출연자나 기여자가 사전 승낙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출연자나 기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고려 사항일 수 있습니다(어떤 것이 '정보에 입각한 승낙'인지는 지침 7.10 및 7.11 참조).
  - 8.4 방송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개인/조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개인/조직은 일반적으로 방송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당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합당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8.5 개인/조직으로부터 의견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뺨치기는<sup>5</sup> 의견을 얻는 모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길이 소진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 8.6 편집된 발췌문은 전체 사건이나 표현된 견해의 취지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8.7 방송사는 공적 관심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위 표방이나 기만(몰래 카메라 또는 은밀한 녹음 장치 포함)으로 얻은 정보를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 8.8 유머의 정당한 표현으로 장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속아 넘어가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8.9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착취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원이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8.10 프로그램이 괴로운 상황(예: 비탄 및 사별)을 다루는 경우, 방송사는 차별심과 감수성을 보여야 합니다.

### 해설

이 기준의 목적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취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는 별개이며, 이슈/사실이 '공정하게' 전달되었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이것은 정확성 또는 균형성 기준의 문제임)를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조직은 바르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리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평가할 때 이 권리는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적 영역의 정보를 전파하는 방송사의 역할과 견주어 조화롭게 적용합니다.

5 '뺨치기(Doorstepping)'는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누군가와 인터뷰해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나 그러한 인터뷰 시도를 말합니다.

# BSA 민원 처리 절차





# BSA 민원 처리 절차

##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뉴질랜드의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면 어떤 것이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민원을 신청하나요?

공식 민원은 먼저 해당 방송사에 넣어야 합니다(단, 사생활 보호 기준에 국한된 민원이거나 선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원은 BSA에 바로 신청 가능).

방송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BSA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민원을 받아주나요?

- ✔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
- ✔ 유료 텔레비전 프로그램
- ✔ 라디오 프로그램
- ✔ 다시 보기/듣기(On demand)를 하는 프로그램 (텔레비전/라디오에서 원래 방송된 내용의 세부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맨 처음 방송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TV나 라디오의 선거 광고(선거 기간 중)
- ✘ 광고(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
- ✘ 프로그램 편성(방송사에 문의)
- ✘ 방송사 웹사이트에 글자로 쓰인 내용(방송사에 문의)
- ✘ 다시 보기/듣기를 하는 프로그램 - 텔레비전/라디오에서 원래 방송된 내용의 세부 정보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방송사에 문의)

-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나가지 않고 방송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뉴스나 시사물(뉴질랜드 미디어 협의회에 문의)

## 어떤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다음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쾌하고 불편한 콘텐츠
- 불법 또는 반사회적 행위의 조장
- 어린이의 이익
- 차별 및 편파
- 균형성
- 정확성
- 사생활 보호
- 공정성

## ‘공식 민원’ 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식 민원이 됩니다. 공식 민원의 요건:

- 서면이어야 합니다.
- 특정 방송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보통 방송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 어떤 방송인지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방송일

- 방송 시간(만약 방송된 시간을 모르면 방송되었으리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간대와 그 앞뒤 방송 내용에 대한 가급적 많은 정보, 또는 해당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기타 정보)<sup>6</sup>
-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을 방송한 채널이나 방송국

- 특정 방송 기준이 위반되었다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원은 BSA 민원 처리 절차에서 심의하지 않으며, 방송사는 이것을 단순히 시청취자 의견으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든 피드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모욕적이고 불쾌한 말이나 괴롭힘과 같이 BSA 직원에게 유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서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 방송물 보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해당 방송물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방송사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BSA가 방송의 내용과 맥락, 분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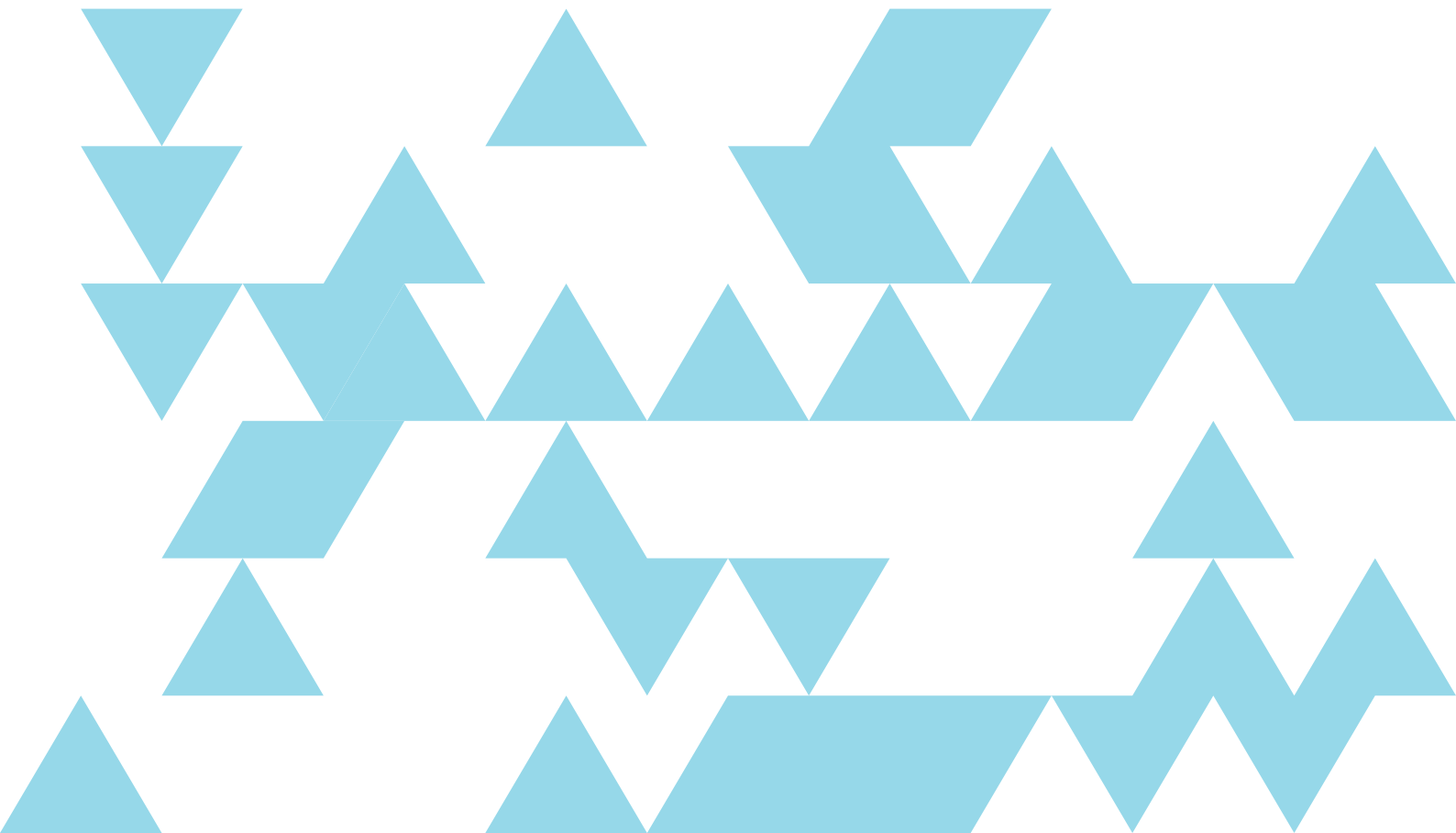
방송사는 방송물을 최소 35일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방송이 민원의 대상이 된 경우(특히 민원인이 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경우), 방송사는 다음의 시점까지 그 방송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 민원 심의를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에 방송물을 전달하는 시점
- 민원을 방송심의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는 최종 기한 날짜로부터 20일 후(방송사가 민원인으로부터 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 처리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듣지 못한 경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심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www.bsa.govt.nz](http://www.bsa.govt.nz)**

<sup>6</sup> 방송사의 자원이 제한되고 특정 방송 내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당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3시간 이내 범위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경우(즉, 한 마디 말이나 한 단어), 적당한 추정 시간 범위는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Te Mana Whanonga Kaipāho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Level 2, 119 Ghuznee Street  
PO Box 9213, Wellington 6141, New Zealand

T: 04 382 9508 FREEPHONE: 0800 366 996

E: [info@bsa.govt.nz](mailto:info@bsa.govt.nz)

[www.bsa.govt.nz](http://www.bsa.govt.nz)